

의안번호	2201942
의 퇴 인	박희승 의원
회 답 일	2024. 8. 8.
추 계 번호	24C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편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883억원(연평균 57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일부 폐지 및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제63조의2)	505	545	578	600	656	2,883	5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에 대하여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시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및 부칙 제2조	○	○ 실적치 추세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증액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 개정안은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표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개요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 금액	월 감액금액	개정안에 따른 변경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폐지,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유지,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주: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가재정소요는 ①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들에 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총 재정소요와, ② 현행

제도에 따라 소득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에 감액을 적용받던 사람들에게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액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합산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① = 현행 제도 적용 시 해당 구간에 대한 평균 감액 금액
- 추가재정소요② = 소득활동에 따라 A값 초과소득월액을 버는 사람 수 × 평균
부양가족연금액 × 회계연도 내 지급 개월 수(12개월)

□ (추가재정소요①) 2018~2023년의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해당자에 대한 감액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다만, 현재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과정에 있으므로 수급개시연령 조정 주기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반복되는 것으로 가정
 - 2019년부터 2022년은 2057년생부터 2060년생이 순차적으로 수급개시연령(62세)에 도달했던 반면, 2023년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코호트가 없음¹⁾
 - 이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061년생부터 1964년생이 순차적으로 수급개시연령(63세)에 도달하고, 2028년을 건너뛰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이 순차적으로 수급개시연령(64세)에 도달
 - 수급개시연령 조정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의 주기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반복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금액 총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5차연도)	2019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총 감액금액	7,368	8,374	10,784	11,726	12,060	11,583
(전년도 대비 증가율)	-	(13.7)	(28.8)	(8.7)	(2.8)	(-4.0)

주: n차연도는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주기 내에서의 차수를 가리킴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들에 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933 억원으로 추계됨

1)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적용연령

구 분	1952년생 이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도달 연도)	(~2012년)	(2014~2017년)	(2019~2022년)	(2024~2027년)	(2029~2032년)	(2034년~)

[표 5]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70	184	190	182	207	933	1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②) 2019~2023년의 월평균 감액 적용자 수 추이와 동 기간 감액 적용 연령대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평균 부양가족연금액 추이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표 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자 수(월평균)	89,892	117,145	120,808	127,974	110,799	5.4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부양가족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므로, 2024년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²⁾를 적용하여 각 연도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산출한 후, 2019~2023년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단가 대비 실제 지급 평균 단가 비율을 기하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급 단가를 추계

[표 8] 2019~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단가 및 지급 평균액 추이

(단위: 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연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기준)(A)	260,720	261,760	263,060	269,630	283,380	-
실제 해당 연령대 지급 평균액(B)	237,088	234,787	232,779	234,144	278,868	-
B/A	90.9	89.7	88.5	86.8	98.4	90.8

주: 1. 해당 연령대라 함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 연령대를 의미

2. 평균 산출 시 기하평균 적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2024.3.29.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적용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951억원으로 추계됨

[표 9]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적용자들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명, 원,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대상자 수(A)	123,010	129,612	136,568	143,897	151,620	—	—
연간 지급 단가(B)	272,400	278,392	284,239	290,203	296,295	—	—
추가재정소요(A×B)	335	361	388	418	449	1,951	3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일부 폐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883억원 (연평균 577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일부 폐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일부 폐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제63조의2)	505	545	578	600	656	2,883	5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